

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(제23조제3항)

구분	자격요건	해당여부
유존지역 평가	1.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	[]
	2.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	[]
	3.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.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.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	[]
	4.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	[]
영향검토	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	[]
	2.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,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	[]
	3.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	[]

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(제31조제1항)

구분	자격요건	해당여부
약식 영향진단	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	[]
	2.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,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	[]
	3.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	[]
	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, 토목, 환경, 도시계획, 소음, 진동, 대기오염, 화학물질,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	[]
	5. 건축, 토목, 환경, 도시계획, 소음, 진동, 대기오염, 화학물질, 먼지 또는 열 분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	[]
	6. 건축, 토목, 환경, 도시계획, 소음, 진동, 대기오염, 화학물질, 먼지 또는 열 분야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	[]